



송재현
공인회계사/세무사
대현회계법인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
- 공인회계사, 세무사(1986년 취득)
- 안건회계법인 근무(1984년~1991년)
- 개인사무소 운영(1991년~2000년)
- 화인경영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2000년~2002년)
-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2002년~현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직은 생소한 전자세금계산서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2008년 개정 당시의 당초 규정을 작년 말에 일부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사업자들로서는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이므로 이번호에는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 당초 10일까지에서 15일까지로 5일간 연장되었음)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세청에서는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기업의 납세 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되기는 하나, 영세납세자의 전자적 발행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1년간은 전자 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산세 적용도 유예되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할 경우에 세액공제, 합계표상 개별명세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등의 혜택은 올해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당초 2010년 의무시행이 1년간 유예된 것으로, 2011년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의무화(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가 예정되어 있으며, 가산세도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그러므로 올해부터 당장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의무화가 예정된 상황에서 해당 사업자들은 이를 앞두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표 1〉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비교

구분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형태	종이	전자파일
인감날인	실제 인감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수신방법	직접 또는 우편수신	이메일 수신
자료 보관 형태	종이 보관	전자파일 보관
합계표작성형식	개별명세 기재필요	전송분은 개별명세 기재 불필요

〈표 2〉 종이·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구분	거래일(1. 1~1. 31)의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작성일자	발행가능기한	전송기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종이세금계산서	1.31	2.10		4.25
전자세금계산서	1.31	2.10	2.15	4.25

준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인 'e세로'를 통하여거나 ASP시스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구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자로 국세청에 2009년 12월 14일 현재 7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음) 및 ERP시스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이 가능하도록 구현된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으로 국세청에 2009년 12월 14일 현재 4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발행절차는 이용하는 시스템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시스템을 결정한 후 해당업체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도록 하자.

그리고 'e세로'의 경우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ASP 및 ERP 시스템의 경우에는 약간의 수수료(업체마다 차이가 있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 역시 기억해 두자.

2.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질문과 답변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교부)시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시기는 현행 종이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시기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으로, 기존의 종이교부를 전자교부로 방법이 바뀐 것이므로 발행시기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했을 때, 양쪽의 발행시기를 비교해보면 〈표 2〉와 같다.

2) 공인인증서의 필요성과 사용가능한 종류

공인인증서는 사업자의 정보보호 및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 국세청 전송시에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법인용·법인용공인인증서와 은행을 통해 발급받은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용이나 증권용 등 용도가 다른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

ASP사업자를 통해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해당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는 공인인증기관이 국세청에 이용가능 통보를 해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관련사항을 확인하여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3)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신확인 및 수신시기 의제

이메일이 필수는 아니나 수신확인이나 거래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하며,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거나 수신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 전송·입력된 때를 수신한 것으로 의제한다.

그리고 이메일 기재란에 매입자의 메일을 우선 기재하고 세무대리인이나 ASP사업자의 메일을 추

가적으로 기재해 둔 경우에는 자료를 호환하여 회계자료 연동이 가능하므로 거래자료를 특정시스템에 중복기입하지 않을 수 있다.

4)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방법이 종전과는 약간 달라진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거래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개별명세는 기재하지 않으나,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경우와 종이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외의 발행분란에 합계액과 거래처별 개별명세를 기재하도록 한다. 

■ 문의 : (02)552-6100 대현회계법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꼭 챙기세요!

작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1 천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향후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되고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증여세 전자신고를 시행합니다.

2009년 11월 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